



「경기도 DMZ 관광 개발사업 관련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2. 9.

경 기 도

경기도 공고 제2022 - 5926호

경기도 DMZ 관광 개발사업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DMZ 관광 개발사업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별표3 규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34(2022.4.28.)호의 기준에 따라 경기도(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DMZ 관광 개발사업 관련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DMZ 관광 개발사업 상·하수도분야 건설공사의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 및 배점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1]과 같다.

②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③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신청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업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공휴일(임시, 대체 공휴일 포함) 제외]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 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별표2]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용역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 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용역사업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는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경기도지사는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2. 09. 14.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가. 참여기술인	6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경력	15 <11~13>	절대평가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소계	25 <21~23>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경력	15 <13~14>		절대평가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등급	3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6			
		교육훈련	1			
	면접(발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	상대평가(SOQ)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2>		
소계			<3~6>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0	유사용역수행실적	8	절대평가		
		용역수행성과	2			
다. 신용도	15	영업(업무)정지	7	절대평가		
		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활용 실적	3	절대평가		
		투자실적	7			
마. 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절대평가		
		참여기술인	2			
총계	100					
바. 가점 및 감점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감점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5		

주) < >안의 배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면접 평가시 적용한다.

[별표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상하수도분야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1)책임건설관리기술인	60 [25] (21~2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가)해당분야경력	15 (11~13)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6">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6">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th> </tr> </thead> <tbody> <tr> <td>1,000억원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td>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td>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td> <td>300억원미만</td><td>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td> </tr> <tr> <td>점수</td><td>15 (13) (12) (11)</td><td>13.5 (11.7) (10.8) (9.9)</td><td>12 (10.4) (9.6) (8.8)</td><td>10.5 (9.1) (8.4) (7.7)</td><td>9 (7.8) (7.2) (6.6)</td> </tr> </tbody> </table>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5 (13) (12) (11)	13.5 (11.7) (10.8) (9.9)	12 (10.4) (9.6) (8.8)	10.5 (9.1) (8.4) (7.7)	9 (7.8) (7.2) (6.6)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5 (13) (12) (11)	13.5 (11.7) (10.8) (9.9)	12 (10.4) (9.6) (8.8)	10.5 (9.1) (8.4) (7.7)	9 (7.8) (7.2) (6.6)																																								
* ()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직무분야실적		9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6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등급</th> <th colspan="5">실적 (단위 : 년)</th> </tr> </thead> <tbody> <tr> <td>특급</td> <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 </tr> <tr> <td>고급</td> <td>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td> </tr> <tr> <td>점수</td> <td>6.0</td><td>5.4</td><td>4.8</td><td>4.2</td><td>3.6</td> </tr> </tbody> </table>				등급	실적 (단위 : 년)					특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0	5.4	4.8	4.2	3.6																		
등급	실적 (단위 : 년)																																												
특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0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3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등급</th> <th colspan="5">실적 (단위 : 년)</th> </tr> </thead> <tbody> <tr> <td>특급</td> <td>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 </tr> <tr> <td>고급</td> <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 </tr> <tr> <td>점수</td> <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 </tr> </tbody> </table>				등급	실적 (단위 : 년)					특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3.0	2.7	2.4	2.1	1.8																		
등급	실적 (단위 : 년)																																												
특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3.0	2.7	2.4	2.1	1.8																																								
* 단,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만 포함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																																													
(나)직무분야실적		9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9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등급</th> <th colspan="5">실적 (단위 : 년)</th> </tr> </thead> <tbody> <tr> <td>특급</td> <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 </tr> <tr> <td>고급</td> <td>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td> </tr> <tr> <td>점수</td> <td>9.0</td><td>8.1</td><td>7.2</td><td>6.3</td><td>5.4</td> </tr> </tbody> </table>				등급	실적 (단위 : 년)					특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9.0	8.1	7.2	6.3	5.4																		
등급	실적 (단위 : 년)																																												
특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9.0	8.1	7.2	6.3	5.4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교육 훈련	1	15 (13~14)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기술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 시 제시																																																																								
			(2)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23~24)																																																																							
			(가)해당 분야경력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 공사비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참여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을 결정하여 발주청이 입찰공고 시 제시																																																																							
			(나)직무 분야실적	9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5">해당분야 경력(단위 : 월)</th> </tr> </thead> <tbody> <tr> <td>300억원이상</td> <td>48이상</td> <td>48미만 42이상</td> <td>42미만 36이상</td> <td>36미만 30미만</td> <td>30미만</td> </tr> <tr> <td>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td> <td>36이상</td> <td>36미만 28이상</td> <td>28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2이상</td> <td>12미만</td> </tr> <tr> <td>100억원미만</td> <td>24이상</td> <td>24미만 18이상</td> <td>18미만 12이상</td> <td>12미만 6이상</td> <td>6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5 (14) (13.5) (13)</td> <td>13.5 (12.6) (12.15) (11.7)</td> <td>12 (11.2) (10.8) (10.4)</td> <td>10.5 (9.8) (9.45) (9.1)</td> <td>9 (8.4) (8.1) (7.8)</td> </tr> </tbody> </table> <p>※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채점방식 : (∑분야별 해당공사 규모 및 경력에 따른 등급 점수) / 평가인원수</p>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미만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5 (14) (13.5) (13)	13.5 (12.6) (12.15) (11.7)	12 (11.2) (10.8) (10.4)	10.5 (9.8) (9.45) (9.1)	9 (8.4) (8.1) (7.8)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미만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5 (14) (13.5) (13)	13.5 (12.6) (12.15) (11.7)	12 (11.2) (10.8) (10.4)	10.5 (9.8) (9.45) (9.1)	9 (8.4) (8.1) (7.8)																																																																						
			<p>○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6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 <th colspan="5">실 적 (단위 : 년)</th> </tr> </thead> <tbody> <tr> <td>특 급</td> <td>12이상</td> <td>12미만 10이상</td> <td>10미만 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td> </tr> <tr> <td>고 급</td> <td>10이상</td> <td>10미만 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 4이상</td> <td>4미만</td> </tr> <tr> <td>중 급</td> <td>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 4이상</td> <td>4미만 2이상</td> <td>2미만</td> </tr> <tr> <td>점 수</td> <td>6.0</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body> </table> <p>※ 채점방식 : (∑분야별 가중치 적용점수) / 평가인원수</p> <p>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3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 <th colspan="5">실 적 (단위 : 년)</th> </tr> </thead> <tbody> <tr> <td>특 급</td> <td>6이상</td> <td>6미만 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td> </tr> <tr> <td></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r> <tr> <td>고 급</td> <td>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td> </tr> <tr> <td></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r> <tr> <td>중 급</td> <td colspan="2">3이상</td> <td colspan="3">3미만</td> </tr> <tr> <td></td> <td colspan="2">3.0</td> <td colspan="3">2.7</td> </tr> </tbody> </table> <p>※ 채점방식 : (∑분야별 가중치 적용점수) / 평가인원수</p>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 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 급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3.0	2.7	2.4	2.1	1.8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중 급	3이상		3미만				3.0		2.7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 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 급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3.0	2.7	2.4	2.1	1.8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중 급	3이상		3미만																																																																								
	3.0		2.7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교육 훈련	1	[10]	※ 단,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만 포함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9점)																																				
			(가)등급	3																																			
			(나)해당 분야경력	6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 <th colspan="5">실 적 (단위 : 년)</th> </tr> </thead> <tbody> <tr> <td>특 급</td> <td>12이상</td> <td>12미만 10이상</td> <td>10미만 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td> </tr> <tr> <td>고 급</td> <td>10이상</td> <td>10미만 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 4이상</td> <td>4미만</td> </tr> <tr> <td>중급이하</td> <td>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 4이상</td> <td>4미만 2이상</td> <td>2미만</td> </tr> <tr> <td>점 수</td> <td>9.0</td> <td>8.1</td> <td>7.2</td> <td>6.3</td> <td>5.4</td> </tr> </tbody> </table> <p>※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배치</p>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 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이하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9.0	8.1	7.2	6.3	5.4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 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이하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9.0	8.1	7.2	6.3	5.4																																		
			<p>○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채점방식 : (∑분야별 가중치 적용점수) / 평가인원수</p>																																				
			<p>※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참여 기술인의 인원수를 결정하여 발주청이 입찰공고 시 제시</p>																																				
			<p>○ 등급에 따라 평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2">등 급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총공사비 300억원이상</td> <td>특급기술인</td> <td>고급기술인 이하</td> </tr> <tr> <td></td> <td>3</td> <td>2</td> </tr> <tr> <td>총공사비 300억원미만</td> <td>고급기술인 이상</td> <td>중급기술인 이하</td> </tr> <tr> <td></td> <td>3</td> <td>2</td> </tr> </tbody> </table> <p>※ 채점방식 : (∑분야별 가중치 적용점수) / 평가인원수</p>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이하		3	2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이하																																					
	3	2																																					
			<p>○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p>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5">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th> </tr> </thead> <tbody> <tr> <td>1,000억원이상</td> <td>15이상</td> <td>15미만 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td> </tr> <tr> <td>300억원미만</td> <td>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 3이상</td> <td>3미만</td> </tr> <tr> <td>점 수</td> <td>6</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body> </table> <p>※ 채점방식 : (∑분야별 해당공사 규모 및 경력에 따른 등급 점수) / 평가인원수</p>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6	5.4	4.8	4.2	3.6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6	5.4	4.8	4.2	3.6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교육 훈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교육 1주는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채점방식 : (Σ분야별 가중치 적용점수) / 평가인원수 ※ 기술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 시 제시 																																																						
	(4)면접 (발표)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문</th> <th colspan="3">용역비</th> </tr> <tr> <th>20억원 미만</th> <th>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th> <th>30억원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td> <td>2점</td> <td>3점</td> <td>4점</td> </tr> <tr> <td>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td> <td>1점</td> <td>1.5점</td> <td>2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면접평가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재난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 문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구 문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유사 용역 수행 실적	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5">유사용역수행 실적(단위:억원)</th> </tr> </thead> <tbody> <tr> <td>3,000억원이상</td> <td>100이상</td> <td>100미만 90이상</td> <td>90미만 80이상</td> <td>80미만 70이상</td> <td>70미만</td> </tr> <tr> <td>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td> <td>85이상</td> <td>85미만 75이상</td> <td>75미만 65이상</td> <td>65미만 55이상</td> <td>55미만</td> </tr> <tr> <td>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td> <td>70이상</td> <td>70미만 60이상</td> <td>60미만 50이상</td> <td>50미만 40이상</td> <td>40미만</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55이상</td> <td>55미만 45이상</td> <td>45미만 35이상</td> <td>35미만 25이상</td> <td>25미만</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30이상</td> <td>3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td> </tr> <tr> <td>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td> <td>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 10이상</td> <td>10미만 5이상</td> <td>5미만</td> </tr> <tr> <td>100억원 미만</td> <td>15이상</td> <td>15미만 11이상</td> <td>11미만 7이상</td> <td>7미만 3이상</td> <td>3미만</td> </tr> <tr> <td>점 수</td> <td>8</td> <td>7.2</td> <td>6.4</td> <td>5.6</td> <td>4.8</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해당공사규모	유사용역수행 실적(단위:억원)					3,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85이상	85미만 75이상	75미만 65이상	65미만 55이상	55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5이상	55미만 45이상	45미만 35이상	35미만 25이상	25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 미만	15이상	15미만 11이상	11미만 7이상	7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8	7.2	6.4	5.6	4.8
해당공사규모	유사용역수행 실적(단위:억원)																																																								
3,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85이상	85미만 75이상	75미만 65이상	65미만 55이상	55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5이상	55미만 45이상	45미만 35이상	35미만 25이상	25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 미만	15이상	15미만 11이상	11미만 7이상	7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8	7.2	6.4	5.6	4.8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용역 수행성과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하는 용역 공종의 특성에 맞게 입찰공고시 제시한다). ○ 업체가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용역평가 결과</th> <th>95점 이상</th> <th>95점 미만 92점 이상</th> <th>92점 미만 89점 이상</th> <th>89점 미만 86점 이상</th> <th>86점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평가점수</td> <td>2점</td> <td>1.8점</td> <td>1.6점</td> <td>1.4점</td> <td>1.2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6점을 부여한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평가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평가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1)영업 (업무) 정지	15	<p>○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p> <p>○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p> <p>○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p> <p>○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p> <p>○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p> <p><신용평가등급 기준></p> <table border="1"> <tr> <td>회사채</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8</td> <td>2.1</td> <td>0</td> </tr> </table>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2)별점	[5]																					
	(3)재정상태 건실도	[3]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개발·활용 실적	10	<p>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p> <p>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p> <p>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 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p> <p>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p> <p>○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p> <p>○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p> <p>○ 기준점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기준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개발실적</td> <td>건설신기술</td> <td>2.0점/건당</td> </tr> <tr> <td>건설신기술</td> <td>0.5점/건당</td> </tr> <tr> <td>활용실적</td> <td>건설기술에 관한 특허</td> <td>0.3점/건당</td> </tr> </tbody> </table> <p>○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5">가 중 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head> <tbody> <tr> <td>실적건수 (건)</td> <td>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r> <tr> <td>실적금액 (억원)</td> <td>20이상</td> <td>20미만 18이상</td> <td>18미만 16이상</td> <td>16미만 14이상</td> <td>14미만 12이상</td> </tr> </tbody> </table> <p>*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p> <p>○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5년미만</th> <th>5년이상 10년미만</th> <th>10년이상 20년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인정률</td> <td>100%</td> <td>80%</td> <td>60%</td> </tr> </tbody> </table> <p>*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 참여 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p> <p>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p>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건설신기술	0.5점/건당	활용실적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건설신기술	0.5점/건당																																											
활용실적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투자 실적	[7]	<p>○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5%이상</td> <td>1.50%미만 1.25%이상</td> <td>1.25%미만 1.00%이상</td> <td>1.00%미만 0.75%이상</td> <td>0.75%미만 0.50%이상</td> <td>0.5%미만</td> </tr> <tr> <td>점 수</td> <td>7.0</td> <td>6.8</td> <td>6.6</td> <td>6.4</td> <td>6.2</td> <td>6.0</td> </tr> </table> <p>※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p>	구 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 수	7.0	6.8	6.6	6.4	6.2	6.0
	구 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 수	7.0	6.8	6.6	6.4	6.2	6.0											
마. 교체빈도	(1)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3]	<p>○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p> <p>○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p> <table border="1"> <tr> <td>교체빈도율(%)</td> <td>5%미만</td> <td>5%이상 10%미만</td> <td>10%이상 15%미만</td> <td>15%이상 20%미만</td> <td>20%이상</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5</td> <td>2.0</td> <td>1.0</td> <td>0</td> </tr> </table>	교체빈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수	3.0	2.5	2.0	1.0	0		
	교체빈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수	3.0	2.5	2.0	1.0	0												
	(2)참여 기술인	[2]	<p>○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p>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p>○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p> <table border="1"> <tr> <td>가중치</td> <td>1.0</td> <td>0.8</td> <td>0.5</td> </tr> <tr> <td>절감금액</td> <td>10억원 이상</td> <td>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td> <td>5억원 미만 1억원 이상</td> </tr> <tr> <td>절감비율</td> <td>1.0% 이상</td> <td>1.0% 미만 0.5% 이상</td> <td>0.5% 미만 0.1% 이상</td> </tr> </table> <p>*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상·하수도 사업의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p>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p>○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p> <p>○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p> <p>○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p>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감 점	부 패 행 위 관 련 자	<p>○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p> <p>※ 위 내용에 대한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부패행위 관련자 평가는 전체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함.</p> <p>○ 감점적용 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p><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p>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부 표]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I. 일반사항

1.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34호(2022.4.28.)]에 의하여 경기도 DMZ 관광개발사업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에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DMZ 관광개발사업 상하수도분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한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여 소수점 2째자리까지만 산정 적용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 계산 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1년은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일수명시)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영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시 제시한다.
 -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영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반드시 용역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인은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 및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총 10개 이상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

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외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 다른 영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영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영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영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경기도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시 중복배치 제외 기간을 제시한다)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1.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상근무일 3일 이내에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2.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

공고 시 제시한다.

-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 3)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 인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 시 명시한다.
-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 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 5) 경기도는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6) 경기도는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경력평가

- 1) 상주기술자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 력 종 류	인정율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상하수도 건설공사의 상주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CM),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상하수도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설계감독, 품질관리 경력	80%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상하수도공사의 계획·시험·검사·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경력 ○ 상하수도분야 계획·검사·시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경력 ○ 상하수도분야 연구업무·교육기관(학교포함) 강의 경력 ○ 건설관련업체의 상하수도분야 관리자 경력 ○ 상하수도분야 유지관리 경력	70%
○ 토목분야 경력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외에서 시행한 사업중 토목분야 경력 -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60%

-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전문분야(금회 평가 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만 한하여 설계, 시공, 감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인정한다.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도시·교통, 환경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 분	유사용역 평가기준	비 고
상수도공사	· 상수도분야 100%	
하수도공사	· 하수도분야 100%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상하수도 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을
 - 해당 상하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text{억원} \times 0.6) + (100\text{억원} \times 0.4) = 160\text{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 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기준환율 및 실적발급기관 명시)

4.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 · 활용실적

-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율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6.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7.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I.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 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II.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III.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기 관 장					직인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경기도청 귀하